

등록번호	감사담당관-1918
등록일자	
결재일자	2024. 2. 21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기술감사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
			02/21
협 조			

「교통 및 주차 시설물 분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



서대문구
감사담당관



목 차



I	감사실시 개요	-----	1
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배경 및 목적	-----	1
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내용	-----	1
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중점 사항	-----	1
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대상 현황	-----	2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적사항 총괄	-----	2
II	감사결과	-----	2
	<input type="checkbox"/> 총평	-----	2
III	주요지적사항	-----	3
IV	지적사항에 대한 처분	-----	6
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	-----	6
	<input type="checkbox"/> 처분요구사항 일람표	-----	6
V	행정사항	-----	8
[별첨]	1.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		
	2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		
	3. 수범사례		

I 감사실시 개요

□ 감사배경 및 목적

- 우리 구 교통 및 주차 시설물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법성,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시정 및 개선하여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코자 함

□ 추진내용

- 감사대상 : 교통행정과, 주차교통과
- 감사기간 : 2023. 11. 27. ~ 12. 29.(기간 중 25일)
- 감사범위 : 2020.1.1.부터 감사 종료일(2023.12.29.)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인원 : 총 4명 (기술감사팀장 외 3명)
- 감사장소 : 감사담당관 내 감사장
- 감사방법 : 서면·실지감사 병행

□ 감사중점 사항

- 사업추진 방법 및 설계·입찰·계약 집행의 적정성
- 공사 시공, 설계변경, 정산 및 준공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
- 하도급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
- 관급자재 정산 등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
- 하자 점검 및 보수 등 관련 업무추진 적정성
- 기타 사업관련 업무처리 적정성

II 주요 지적사항

□ 노면표시 공사 준공 후 재귀반사성능 측정 미실시

「각종 도로포장공사의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」 3.1.1.(시공기준) 및 3.1.2.(하자검사) 에 따르면, 신규로 시공한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공사준공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, 기준값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하에 재시공 조치토록 되어 있다.

- ♣●과에서는 「2020년 노면표시★●♣」 외 6건 사업에 대해 노면표시 공사 준공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 시공업체에게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토록하여 측정값 미달 시 재시공 조치 등을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□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미적용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(공사계약일반조건) 제7절 1-가에 따르면,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,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- ♣●과에서는 2021~2023년 「북아현동 ★♠♣(토목건축)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 하면서, 「기존보도블록 철거」 공종에 대해 「보도블록 장비사용 철거」 품을 신규 비목으로 적용하여 수량 221㎡ 설계변경(정산)해야 함에도, 단가가 높은 기존 비목 「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(B-Type)」 품으로 설계변경(정산)하여, 공사비 ★♠♣천원 상당 과다지급 초래하였다.

□ 「보도블록 절단 및 설치」 공종 중복 적용

「2021 건설공사표준품셈」 '1-7-1 「보도블록(고압블록) 포장」 [주](2)에 따르면, 「본 품은 블록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」고 명시 되어 있다.

- ♣●과에서는 「연희삼거리 ★♠♣」 외 5건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「보도블록(고압블록) 포장」 품에는 「블록 절단 및 설치」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에

도 공종별 내역서에 「블록 절단 및 설치」 공종을 추가 반영 후 준공(정산)하여, 공사비 ★♠♣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□ 「크레인 트럭」 공사원가계산 산출 부적정

「건설공사 표준품셈」 제1장(적용기준) 1-1-3 (적용방법)에 따르면,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한다. 고 명시되어 있다.

- ♣◎과에서는 「2020년 횡단보도★♠♣」 외 2건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비목 「크레인(5Ton)트럭」 일위대가표 작성 시 1(식)개소당 단가를 적용해야하나 2(식)개소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도하게 산출되었음에도, 최종 준공 시까지 정산 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, 공사비 ★♠♣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□ 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(공사계약일반조건) 제7절 1-가.에 따르면,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,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·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.

- ▣♣◎과에서는 「2021~2023년 「북아현동 ★♠♣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「공사예고표지판」 수량 6개에 대해 실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설계변경(정산) 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비 ★♠♣천원 상당 과다지급 초래하였다.

□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소홀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83조(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)에 따라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하며, 건설공사 준공시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토록되어 있다.

- ▣♣◎과에서는 「2022년 버스정류소 ★♠♣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상하였으며, 준공시에도 정산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된 요율로 금액을 산출하여 공사

비 ★♠♣천원을 과다 지급 초래하였다.

□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-153호) 제49조(현장대리인 등의 교체)에 따라 현장대리인 등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- □♣●과에서는 「2021~2023년 「북아현동 ★♠♣」 외 1건의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력이 부족한 현장대리인을 신고하였음에도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 교체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준공처리 한 사실이 있다.

□ 사무전결 규정 미준수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 제4조(전결방법)에 따르면,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제 결정과 착수, 기공 및 준공기간의 연기 할 경우 전결권자는 국장으로 명시되어 있다.

- □♣●과에서는 「북아현동 ★♠♣」 전기 및 기계설비 사업의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을 연기하면서 국장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부서장 전결 처리하여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.

□ 관급자재 구매설치 후 하자검사 미실시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계약의 담보책임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70조(하자검사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.

- □♣●과에서는 「노인보호구역 ★♠♣」 사업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□ 노무비 청구 부적정(건설정보관리시스템 미활용)

「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(Ver. 5.2)」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노무비 청구는 전자인력관리제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(One-PMIS)에서 ‘노무비명세서’를 출력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 고 명시되어 있다.

- □♣◎과에서는 「신촌기차역 ★♠♣」 외 1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건설정보관리시스템(one-pmis)에서 출력한 ‘노무비 청구 명세서’로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 및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.

□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

「건설공사 표준품셈」 제1장(적용기준) 1-1-3(적용방법)에 따르면, 예정가격작성 기준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, 공사규모,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” 라고 명시하고 있다.

- □♣◎과에서는 「공영주차장 ★♠♣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표준품셈(건축 3-1-1)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를 참고하여 무근콘크리트 품셈을 반영해야 함에도, 철근콘크리트 품셈을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★♠♣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□ 신규비목 낙찰률 미적용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“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.”고 명시하고 있다.

- □♣◎과에서는 「연희동 ★♠♣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주차블록(카스토

퍼)’ 외 2건 신규비목을 단가산출 시 낙찰률(87.751%)을 곱한 금액을 적용해야 하나, 낙찰률을 미반영함으로써 공사비 ★♠♣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□ 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(검사) 제⑤항에 따르면 “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- □♣●과에서는 「소규모 ★♠♣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「볼라드 설치」 공종에 대한 실 시공물량이 7개→3개 감소하였음에도 감액없이 준공 처리하여 ★♠♣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□ 건설일용근로자 적정 노무비 미지급

「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」 제24조 ⑩항에 따르면, ‘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, 근로자에게 적정임금(대한건설인협회에서 조사·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)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.’라고 명시되어 있다.

- □♣●과에서는 「연희동 ★♠♣」 사업을 시행 및 준공하면서, 계약상대자가 건설일용근로자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노무비 단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시정요구하지 않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절차 미이행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 준공 전 「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」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기관별 검토 담당자(우리 구 감사담당관)를 지정하여 검증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

- 교통행정과, 주차교통과에서는 「서대문구청 앞 ★♠♣ 설치공사」 등 3건 사업을 준공하면서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」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토 절차를 이

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□ 공사분야 하자검사 미실시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(하자검사)에 따르면,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하여야 한다. 고 명시되어 있다.

- 교통행정과, 주차교통과에서는 「태양광 ★♠♣」 외 14건 사업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내에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, 하자보수관리부도 기록·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